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하영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0 발의연월일: 2020. 9. 8.

발 의 자:하영제・강기윤・권명호

김기현 · 김용판 · 박대출

박성민 · 서범수 · 서일준

조경태 · 홍준표 · 황보승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공휴일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휴일은 국민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치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실정임.

그리고 도시화·핵가족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사라져 가고 있는 경 로효친의 미덕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기리며, 노인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일본에서는 1954년에 노인의 날을 국가공휴일로 정하여 경로효친의 의식을 높이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인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 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 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2일)
- 5.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 6. 어린이날(5월 5일)
- 7. 현충일(6월 6일)
-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6일)
- 9. 노인의 날(10월 2일)
- 10. 성탄절(12월 25일)
-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 12. 그 밖에 정부에서 임시로 지정하는 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②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